

제2025-85호 2025년 9월 23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425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돌산읍 평사리 외 3필지) 1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790호 도로지정 공고[공화동 837번지 외 8필지] 3
- 여수시 공고 제2025-2797호 도로지정(폐지)(돌산읍 평사리 916번지 외 2필지) 5
- 여수시 공고 제2025-2798호 도로지정(폐지)(돌산읍 평사리 928번-68번지) 7
- 여수시 공고 제2025-2799호 도로지정(폐지)(돌산읍 평사리 928번-68번지)2 9
- 여수시 공고 제2025-2800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1
- 여수시 공고 제2025-2802호 2025년도 도로 분야 등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12
- 여수시 공고 제2025-2803호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수탁자 모집 18
- 여수시 공고 제2025-2808호 여수시 이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변경 43
- 여수시 공고 제2025-2814호 전문건설업 등록제(에스이엔씨) 45
- 여수시 공고 제2025-2821호 개인형 이동장치(PM)견인대행업체 재모집 46

입 법 예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820호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입법예고 50
- 여수시 공고 제2025-2822호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69

회 략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여 수 시 장

- 다 음 -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점용 사용				피허가자	
		장소	면적 (㎡)	기간	목적	성명	주소
2025-00051	2025.9.12.	돌산읍 평사리 1412	35	2025.9.10.~ 2040.5.31.	주택 진출입로	노성일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58-1
2025-00052	2025.9.12.	봉산동 208-4 봉산동 242-30	43	2025.9.10.~ 2030.5.31.	도시가스 배관 설치	대화도시가스 (주)	여수시 만성로 178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점용 사용				피허가자	
		장소	면적 (㎡)	기간	목적	성명	주소
2025- 00053	2025.9.19.	소라면 봉두리 1362-10	0.096	2025.9.10.~ 2030.9.17.	전신주 설치	한국전력공사	여수시 좌수영로 416
2016- 00002	2025.9.16.	돌산읍 평사리 1417	53	2015.12.29. ~2028.5.31.	창고시설 진출입로	전성철	여수시 박림화길 61

끝.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공화동 837번지 외 8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 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공화동 837	6	1	6	도로대장 참조	
공화동 836-79	3	1	3	도로대장 참조	
공화동 838-2	1	1	1	도로대장 참조	
수정동 702-25	4	1	4	도로대장 참조	

2.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

여 수 시 장

[별첨]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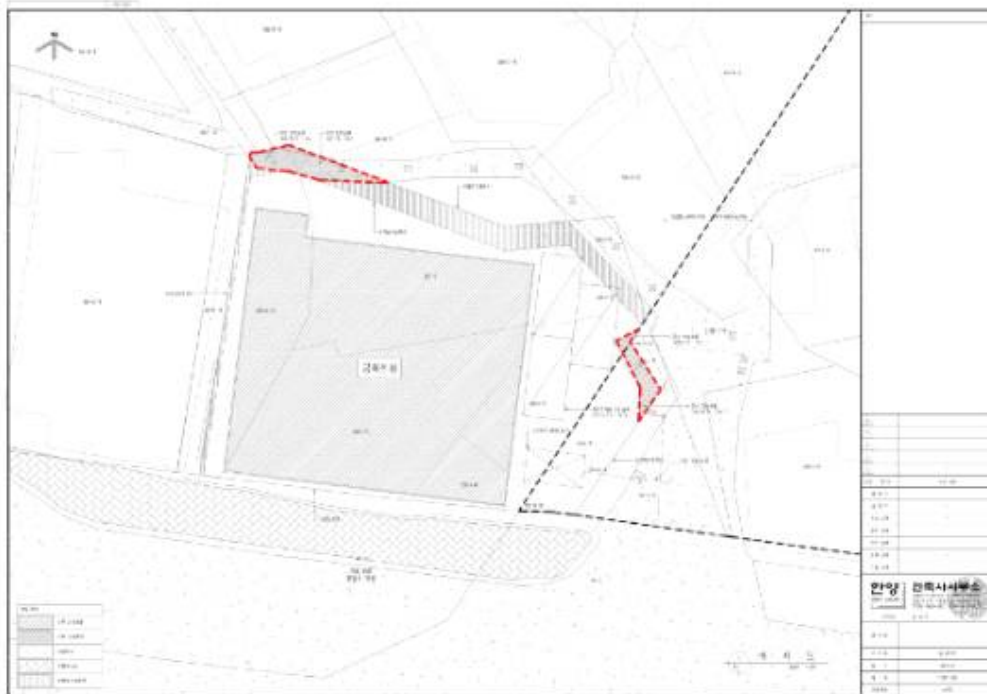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150, [] 1/1,200

도로지정(폐지)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916번지 필지 상 건축신고[2023-허가과-건축신고-148호] 취소[허가과-32767(2025. 9. 10.)]와 관련하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 지정(폐지) 공고합니다.

2025. 9. 18.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916번지, 913번지, 928-68번지
2. 도로면적 : 183m²
3. 도로길이 : 61m
4. 도 로 폭 : 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4,643	183	
1	돌산읍 평사리	928-68	임	1,513	33	
2	돌산읍 평사리	913	답	2,093	106	
3	돌산읍 평사리	916	답	1,037	44	

6. 폐지사유 : 건축신고 취소[허가과-32767(2025. 9. 10.)]에 따른 도로지정(제2023-2550호) 폐지
7.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및 현황도



도로지정(폐지)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913번지 외1필지(928-68번지)필지 상 건축신고[2023-허가과-건축신고-105호] 취소[허가과-32765(2025. 9. 10.)]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지정(폐지) 공고합니다.

2025. 9. 18.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928-68번지
2. 도로면적 : 287m²
3. 도로길이 : 48m
4. 도 로 폭 : 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513	287	
1	돌산읍 평사리	928-68	임	1,513	287	

6. 폐지사유 : 건축신고 취소[허가과-32765(2025. 9. 10.)]에 따른 도로지정(제2023-1628호) 폐지
7.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 첨]

위 치 도 및 현황도



[여수시 공고 제2025-2799호]

도로지정(폐지)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913번지 외1필지(928-68번지)필지 상 건축신고[2023-허가과-건축신고-142호] 취소[허가과-32764(2025. 9. 10.)]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지정(폐지) 공고합니다.

2025. 9. 18.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928-68번지
2. 도로면적 : 106m²
3. 도로길이 : 22m
4. 도 로 폭 : 2.8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513	106	
1	돌산읍 평사리	928-68	임	1,513	106	

6. 폐지사유 : 건축신고 취소[허가과-32764(2025. 9. 10.)]에 따른 도로지정(제2023-2417호) 폐지
7. 관련도서 : 별첨참조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 시 송 달 공 고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낙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과태료)제1항제1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와 의견제출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9. 19. ~ 2025. 10. 10. (21일간)
2.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

성명	주 소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금액 (감경액)	송달 불능 사유
박*원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	낙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750,000원 (600,000원)	폐문부재

4.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5598)

5. 기 타

- 이의가 있는 경우 여수시청 수산경영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에 따라 여수시 도로분야 등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여수시장

1. 공고기간 : 2025. 9. 22.(월) ~ 2025. 10. 14.(화) 17:00까지

2. 모집분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3. 참가 자격 *아래자격을 모두 만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나.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 개인사업자는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

4. 신청서 접수

가. 제출기한 : ~ 2025. 10. 14.(화) 17:00(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도로과 도로계획팀(☎061-659-4072)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우)59689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구보건소), 도로과 도로계획팀 ※ 방문접수 시 사전 연락 요망

라. 제출서류 목록

-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붙임1】 1부
- 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붙임2】 1부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④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5. 10. 16.(목) 이후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모집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서류 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부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나. 신청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명부 관리는 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모집공고에 응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작성·관리하며, 향후 안전점검 필요시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시공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여수시 도로과 도로계획팀 (☎061-659-40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	------	-----------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토목분야 [] 건축분야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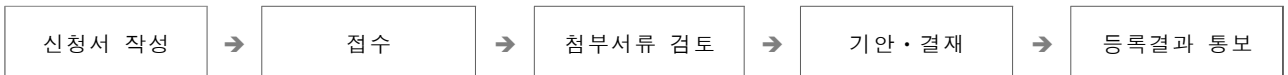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 · 허가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여수시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예술인촌」을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9. 22.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9. 22.(월) ~ 10. 10.(금) / 19일간
2. 위탁시설 현황
 - 가. 시설명 : 여수시 예술인촌
 - 나. 부 지 :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516-2(구 옥적초등학교), 9,808m²
 - 다. 건 물 : 작가동·전시관·생활문화센터·관사, 2층/5동 1,486.17m²
3. 위탁사무
 - 가. 예술인촌 재산의 선량한 관리
 - 나. 예술인촌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시행
 - 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 라. 주민의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 마.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유지 관리
 - 바. 도난·화재 등 재난 예방 조치
4.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2026. 1. 1. ~ 2027. 12. 31.)

5. 응모자격

-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수행 능력이 있고,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사무소 또는 주소지를 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6. 위탁조건

- 가. 재산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재해복구보험·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나. 예산지원 관련
 -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수탁자는 지원받은 시비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여수시장과 수탁자 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다.

7. 제출서류

가-1. 법인(단체) 신청서 등

- 신청서 1부(서식 1-1)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 인감계(서식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 서약서 1부(서식 3-1)
-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서식 4)
-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서식 5)
- 사업실적(서식 6) 및 증빙서류 10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서식 7)

가-2. 개인 신청서 등

- 신청서 1부(서식 1-2)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사업자에 한함)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서식 3-2)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사업실적(서식 6) 및 증빙서류 10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서식 7)

나.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10부(서식 8)
-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1부, CD 1매 또는 USB 1개
※ 추가로 PPT 원본 파일 이메일 송부 요망(kjieun2270@korea.kr)

다. 예산 산출 내역서(서식 9~10) 각 1부

- 시비보조금 : 연간 18,000천원 기준으로 작성(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0부(서식 1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서식 12)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8.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0. 1.(수) ~ 10. 2.(목), 10. 10.(금) (접수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9. 수탁자 선정 및 발표

- 선정기준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운영사항,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
 - 심사일 별도 통지
 - 수탁신청 대표자(또는 위임자)는 15분 이내 설명,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정
- 선정된 수탁자가 협약 대상이며, 여수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재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단독 신청 시에는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단독 신청자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 심사발표 : 선정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참고] 평가기준

<법인·단체>

심사항목		평가기간	배점	심사	평가기준					
합계			100							
소계			20							
운영사항 (20)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실적(최근 5년간) *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	20		5년 이상	4~5년 미만	3~4년 미만	2~3년 미만	2년 미만	없음
					20	16	12	8	4	0
소계			10							
재정사항 (10)	1.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2024 년도 기준	5		100% 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5	4	3	2	1	
	2.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5		100% 이상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5	4	3	2	1	
소계			10							
중대재해예방 (10)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제안 설명일 기준	10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소계			50							
종합판단 (50)	운영계획서 종합판단 (서류심사,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일 기준	50		심사위원 개별 판단					
소계			10							
기타 (10)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2022년도 이후)	접수일 기준	10		5회 이상	3~4회	1~2회	없음		
					10	7	5	0		

※ 비영리 법인으로 재정사항 평가가 어려울 경우 종합판단 점수를 60점으로 한다.

<개인>

심사항목		평가기간	배점	심사	평가기준					
합계			100							
소계			20							
운영사항 (20)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실적(최근 5년간) *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	20		5년 이상	4~5년 미만	3~4년 미만	2~3년 미만	2년 미만	없음
					20	16	12	8	4	0
소계			10							
중대재해예방 (10)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제안 설명일 기준	10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소계			60							
종합판단 (60)	운영계획서 종합판단 (서류심사,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일 기준	60		심사위원 개별 판단					
소계			10							
기타 (10)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2022년도 이후)	접수일 기준	10		5회 이상	3~4회	1~2회	없음		
					10	7	5	0		

10.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의 결정을 따름
- 신청자는 심사일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탁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식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 강지은 주무관(☎659-4694) 문의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법인·단체·개인)																
소재지 (연락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p>「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수시 예술인촌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25년 10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청자 주소 :</p> <p style="margin-left: 100px;">기관명 :</p> <p style="margin-left: 100px;">대표자 : (인)</p> <p style="margin-left: 50px;">여수시장 귀하</p>																
<p>첨부서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td> <td style="width: 50%;">3.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td> </tr> <tr> <td>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td> <td>4.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td> </tr> <tr> <td>4. 서약서 1부</td> <td>5.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td> </tr> <tr> <td>6.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td> <td>7.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10부</td> </tr> <tr> <td>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td> <td>9.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10부</td> </tr> <tr> <td>10. 예산산출내역서 1부</td> <td>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td> </tr> <tr> <td>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td> <td>13.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td> </tr> </table>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3.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4. 서약서 1부	5.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6.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	7.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10부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9.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10부	10. 예산산출내역서 1부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3.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3.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4. 서약서 1부	5.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6.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	7.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10부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9.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10부															
10. 예산산출내역서 1부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3.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1-2 : 개인>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법인·단체·개인)		
소재지 (연락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p>「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수시 예술인촌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0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p> <p>여수시장 귀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각1부2. 사업자등록증(사업자에 한함)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3. 서약서 1부4.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1부5.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6.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10부7.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8.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10부9. 예산산출내역서 1부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12.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2>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신청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수탁신청부터 협약 체결까지 여수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수탁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1부

2025년 10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1 : 법인 . 단체>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명 :

위 법인(단체)은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10월 일

위 서약인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2 : 개인>

서 약 서

○ 성 명 :

위 개인은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10월 일

위 서약인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법인(단체) 일반 현황

1. 명 칭 :
2. 소 재 지 :
3. 설립근거 및 목적 :
4. 대 표 자 :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요 이 력

5. 구 성 인 력 :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7. 주 요 사 업 내 용
8. 단체(법인)의 기구(도표)

※ 증빙자료첨부 : 법인(단체)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또는 규약) 1부.

제출인 법인(단체)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5>

법인(단체) 재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4 회계년도	비 고
1. 총 자산		
2. 유동자산		
3. 고정자산		
4. 총 부 채		
5. 유동부채		
6. 고정부채		
7. 총 기본금(자기자본)		
8. 출연 기본금		
9. 잉여·적립금 등		
10. 총 매출액		
11. 부채비율(%) (고정부채+유동부채/자기자본)		

주)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한
재무제표 첨부

<서식 6>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관련기관 (지원기관)	비고
계					

※ 참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사업실적을 연도별로 구분 작성
- 증빙서 첨부

여수시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3. 8. 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 8. 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 여주시 예술인촌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2025. 10. .

○○○○(법인.단체.개인) (인)

목 차

1. 목표 및 비전제시		00
2. 사업계획		00
	- 여수시 예술인촌 총괄 운영 계획	
	- 여수시 예술인촌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횟수, 연/월간 추진계획	
	- 국가 또는 타 기관 사업 연계추진 계획	
	- 시민서비스 강화 계획	
3. 재정 운영계획		00
	- 수입계획 : 위탁금, 자부담 등	
	- 지출계획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홍보비 등	
4. 조직 운영계획		00
	- 인원 및 조직구성도, 업무분장	
	- 인력확보 및 배치운영 계획	
5. 여수시 예술인촌 홍보계획		00
6. 기타 사항		00

※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상기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참 고 사 항

1. 수탁운영 사업계획서는 작성내용 및 목차를 준수하여 20매 이내로 작성 후 인쇄물로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후 수정 및 반환 불가
2.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인쇄 및 단면 제본 기준
 - 규 격 : A4(210× 297mm)용지, 한글(휴먼명조 15), 문단 간격 180%, 좌우여백은 각각 25, 상하 여백은 각각 15
 - 제 본 : 좌철
 - 쪽번호 : 가운데 하단에 1, 2, 3으로 표기
3.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운영계획서 설명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20매 이내) 1부와 CD 1매 또는 USB 1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4. 인력확보 및 배치운영 계획 상의 전문인력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시 허위 작성으로 인정하겠음.

<서식 9>

예산산출내역서(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	산 출 내 역
총 계			
1. 민간위탁금			
2. 회비수입			
3. 기부금 등			

※ 참고사항

- 양식은 추가 및 변경가능
- 민간위탁금은 연간 18,000천원 기준으로 작성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예산계획 자체수립

예산산출내역서(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	산 출 내 역
총 계			
1. 인건비			
2. 운영비(경상경비)			
3. 시설비			
1) 시설장비유지비			
2) 기타			
4. 사업비			
1) 프로그램 운영			
2) 홍보비			
3) 기타			
5. 기타사업비			
○			
○			
○			

※ 참고사항

- 양식은 추가 및 변경가능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예산계획 자체수립

여수시 예술인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위·수탁기간	수탁자 현황			최근 3년 재해현황
		수탁자명	종사자수	민간위탁금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위탁	2026. 1. 1. ~ 2027. 12. 31.			18,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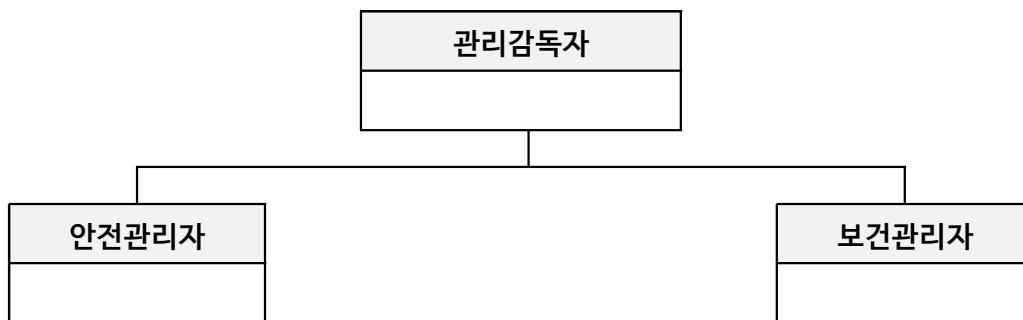
2.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방침

-
-
-

안전보건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비상연락망 :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 기재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방안 : 여수시(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팀장, 사업담당자)
+ 수탁자(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 예산

-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등
-
-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대응계획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등
-
-

3. 안전보건관리활동

□ 안전보건교육 계획

- ※ 교육과정, 일정, 인원, 방법 등
-
-

□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

□ 위험성 평가 실시

- ※ 시설물 관리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정기/수시)

-
-

4. 유해·위험물질 목록

순번	유해· 위험물질	용량	작업장소	사용량	저장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위급상황시 조치방법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생략 가능

5. 사용 기계·기구·설비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여수시 공고 제2025-2808호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변경 공고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명단 공개)에 의거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9. 22. ~ 10. 6. (15일간)
 2. 위원회 인원 :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3. 위원회 역할 : 아래의 사항을 심의함
 - 가. 아동친화도시 구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다.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라. 아동정책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위원회 명단 : 붙임 참고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061-659-3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직책	성명	소속(직위·직업)	위원임기	비고
1	공동 위원장	정기명	여수시장	재임기간	
2	공동 위원장	정윤희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024.09.25. ~2026.09.24.	
3	위원	김정오	여수시 복지교육국장	재임기간	
4	위원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2024.09.25. ~2026.09.24.	
5	위원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2024.09.25. ~2026.09.24.	
6	위원	윤양석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2025.09.01. ~2026.09.24.	인사이동
7	위원	임재선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2024.09.25. ~2026.09.24.	
8	위원	최민규	한빛어린이집 원장	2024.09.25. ~2026.09.24.	
9	위원	곽봉애	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 원장	2024.09.25. ~2026.09.24.	
10	위원	정유진	응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2024.09.25. ~2026.09.24.	
11	위원	윤재린	법무법인 리앤윤 대표변호사	2024.09.25. ~2026.09.24.	
12	위원	이정만	법무사이정만사무소 법무사	2024.09.25. ~2026.09.24.	
13	위원	김창화	광주일보 동부취재본부장	2024.09.25. ~2026.09.24.	
14	위원	이태영	한영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2024.09.25. ~2026.09.24.	
15	간사	윤경희	여수시 여성가족과장	재임기간	

※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제이에스이엔씨(주) (김*춘)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중흥2로 56-33
3. 법 인 등록번호 : 206211-0041322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철강구조물	여수-25-차-02	철강구조물공사	2025. 9. 22.

2025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대행업체 재모집 공고

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및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의 규정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대행업체를 다음과 같이 재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1. 사업의 종류 :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대행업
2. 사업의 장소 : 여수시 관내
3. 지정 업체수 : 1개 업체
4. 신청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영업 소재지를 둔 자
 - 견인대행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자

【견인보관소】

- ▶ 차량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 ▶ 주차대수 30대 이상 주차 및 부대시설 확보
- ▶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 등 필요한 시설 설치

【인력 및 장비】

- ▶ 견인차량수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소유자)
- ▶ 견인차량 1대 이상
- ▶ 보관·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 1명
- ▶ 사무실,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5. 신청서 접수기간 : 2025. 9. 22. ~ 2025. 10. 10.(18일간)

- 접수처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 e-자전거팀

6. 구비서류

- 견인대행업 지정신청서(도로시설관리과 비치)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등록)증 사본 1부.
- 주차장 확보 관련 서류(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1부.

7. 견인대행업체 선정

- 추첨일시 : 2025. 10. 15.(복수 지원 시)
- 구비요건 적격자(개별통보)를 대상으로 사업의 장소별로 공개 추첨

8. 견인대행업체 지정기간 : 2025. 11. 1.~2026. 10. 30.(1년)

9. 대행비용 : 없음(견인비용 수입 충당, 개인형 이동장치 15,000원/1대)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e-자전거팀 ☎659-456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개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법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행능력	주차면적	견인차 대수
견인지역			
비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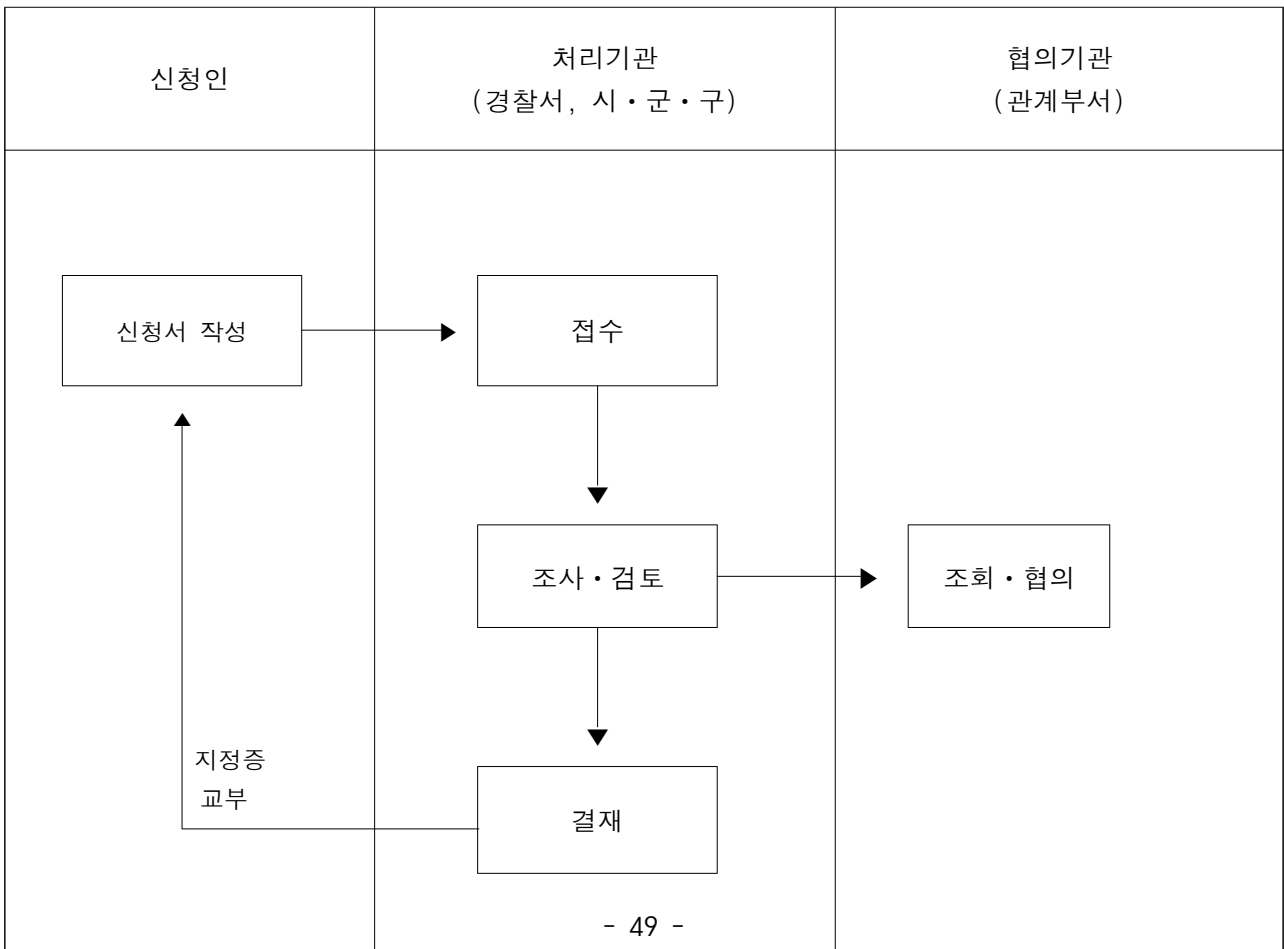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대행법인등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 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공 고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감면 근거 마련
- 평생학습 행사운영 경비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 마련
-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삭제

2. 주요 내용

- (안 제5조) 경비의 지원 범위 명확화
 - 평생학습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안 제20조) 참여자에 대한 지원 신설
 - 평생학습 행사 적극 참여 관련자에 대한 시상금 또는 시상품 지급
- (안 제21조) 수강료 및 감면 조항 신설
 - 1과목 1개월 10,000원
- (안 제4장)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5. 입법예고기간 : 2025. 9. 23. ~ 2025. 10. 13.(20일간)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10월 13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제출기관 : 여수시장(평생교육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 6길 51, 1층 (여수시 평생학습관)
 - 팩 스 : 061-659-5854
 - 전자메일 : sukhee02@korea.kr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평생교육과(☎ 061-659-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여수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6.]

제3조(기본원칙)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개정 2015. 10. 2.>

[중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중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2. 여수아카데미 등 평생교육강좌 <개정 2023. 12. 6.>
3. 여수평생학습 박람회 <개정 2023. 12. 6.>
4.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및 전남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 <개정 2023. 12. 6.>
5. 여수시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

6.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여수시 평생학습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본항 전문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6.]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10. 2.> [본조 전부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2장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

제6조(협의회의 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수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31., 2015. 10. 2.>
3.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 12. 31.>

4.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0. 5. 2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위원은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수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1.>

[중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12. 31.>

1.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 12. 31.>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3조(협의회의 간사 등)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0. 2.>

[중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4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수시 평생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시설·단체의 실무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한다

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5. 10. 2.>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3장 여수시평생학습관 <개정 2009. 12. 31.>

제16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을 통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수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7조(사무소의 위치) 평생학습관의 사무소는 여수시 응천6길 51에 둔다. <개정 2009. 12. 31., 2013. 8. 14., 2023. 12. 6.>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8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학습시설의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4.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5. 시민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산업육성 프로그램 적극 개발 운영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신설 2009. 12. 31.>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5. 10. 2.] [개정 2023. 12. 6.]

7.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시설·단체에 대한 포상 <신설 2009. 12. 31.>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5. 10. 2.]

8.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5. 10. 2.]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19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9. 12. 31.>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기관·시설·단체 또는 학교법인에 평생학습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2., 2019. 10. 14.>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3. 12. 6.]

제20조(참여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①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 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산정 기준, 감면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 기준, 모집 절차, 위촉 방법, 평가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삭제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 <신설 2023. 12. 6.>

제23조(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기업의 생산현장에 필요한 전문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테크니션스쿨(이하 “스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스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여수시와 스쿨 간의 상호연계시스템 구축·운영
4. 학습 운영 및 강사의 수급 관리
5. 수강생의 모집 및 교육·홍보
6. 취업 관련 정보제공·전문가 컨설팅 등 연계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3. 12. 6.)

제24조(조직의 구성) ① 스쿨에는 원장 1명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스쿨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스쿨의 운영주체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④ 삭제

(본조 신설 2023. 12. 6.)

제25조(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 실적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2. 스킴의 관리 및 운영으로 알게된 개인정보 또는 공무상 비밀을 위법·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조 신설 2023. 12. 6.)

[중전의 제28조에서 이동]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준용) 제28조에 따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3. 12. 6.)

제6장 보칙 (제4장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5장에서 이동 2023. 12. 6.>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경비의 지원) ① (생략)</p> <p>② <u>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 참여자 및 기관·시설·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u></p> <p>제4장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제20조(설치 등) ① <u>시장은 지역 주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문화 체험학습 등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 외국어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② <u>학습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③ <u>“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는 온라인 방식의 학습센터를 말하고, “외국어 지역학습센터”는 오프라인 방식의 학습센터를 말한다.</u></p>	<p>제5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20조(참여 지원) <u>시장은 평생학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u></p>

제21조(사업) ①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2. 여수시와 학습센터 간의 상호연계시스템 구축·운영
3. 원어민 화상학습 운영 및 강사의 수급 관리
4. 원어민 화상학습 수강생의 모집 및 교육·홍보
5. 국제화 교육특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외국어 능력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 설>

<신 설>

제22조(운영 등) ① 시장은 학습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 ①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산정 기준, 감면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강사) ①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
-----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

② 학습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민간 위탁기간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 기간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2. 학습센터 운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공무상 비밀을 위법·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3조(준용) 제22조제1항에 따라 학습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② 강사의 자격 기준, 모집 절차, 위촉 방법, 평가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설 2013. 8. 14., 개정 2019. 10. 1

4.)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

제24조 (생략)

제25조(조직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원장이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6조(원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된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의 직무수행이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

제23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4조(조직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원장이 임기 중 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거나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사무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스킴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생략)

<삭제>

제25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공 고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감면 세부기준 마련
- 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 기준 등 규정 명확화

2. 주요 내용

-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수강신청 및 수강료
 - 수강신청 방법 및 강의개설 요건, 수강료, 감면기준, 반환기준
-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강사위촉
 - 강사자격 및 해촉 기준, 강사료 지급 기준과 평가 규정

3. 개정시행규칙안 : 붙임 1

4. 입법예고기간 : 2025. 9. 23. ~ 2025. 10. 13.(20일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10월 13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제출기관 : 여수시장(평생교육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 6길 51, 1층 (여수시 평생학습관)
 - 팩 스 : 061-659-5854
 - 전자메일 : sukhee02@korea.kr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평생교육과(☎ 061-659-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통한 접수순서로 하되,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및 방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수강생 등록 인원이 모집 정원의 60%에 미달할 경우 폐지할 수 있다.

제3조(수강료)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강좌의 성격에 따라 시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4조(수강료 감면)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평생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업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일로 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한 사람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 자격증 등 강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해당분야의 자격증 또는 졸업증서를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강사 위촉을 위한 평가회의를 운영할 경우,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사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 ① 강사료는 교육의 특성, 해당분야의 전공 여부,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강사료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강사의평가) 시장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동아리 등의 학습 활동
2. 평생학습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운영사항은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